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0. . . (제 회)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장기 거주불명자 주민등록 직권말소와 관련된 「주민등록법」 개정('20. 12.4. 시행)에 따라 직권말소 대상·기준 등을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하고, 위장전입 방지 등 주민등록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개선 및 주민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해 주민등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정부위원 수 축소(안 제12조의11제1항 개정)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민간 전문성 활용 확대를 위하여 정부위원 수를 축소하도록 함.

나.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 시 사실조사 실시(안 제13조제3항 신설)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 등록도 직권 거주불명과 동일하게 사실조사 및 최고(공고) 등 절차를 이행하도록 함.

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재외국민 주민등록 서류 확인(안 제14조 제3항 및 제32조제2항 신설)

재외국민 주민등록 시 필요한 서류(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해외이주 신고 확인서 사본)를 직접 제출받는 대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라. 신규 전입사실 및 세대주 변경 사실 통보제도 신설(안 제20조제3항 및 제23조제4항 신설)

건물소유주·임대인·현 세대주가 사전에 신청하면 신규 전입사실 및 세대주 변경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

마. 행정자료 활용을 통한 장기 거주불명자 조사 및 관리 강화(안 제31조의2 및 제31조의3 신설, 제60조의2 개정)

1) 사실조사와 직권조치를 위해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과 요청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함.

2) 거주불명 등록상태의 변동 없이 최근 5년간 행정서비스 이용 실적 없는 자를 직권말소하도록 함.

3) 거주불명자의 행정서비스 이용실적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에 대한 이용근거를 마련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11제1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경찰청”을 “행정안전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위원회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말소신고 또는 거주불명 등록신고”를 “말소신고”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신고를 받으면 법 제20조에 따른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의 무자에 대한 최고 및 공고에 관하여는 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고, 직권조치 및 직권조치에 따른 통지 및 공고에 관하여는 법 제20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제14조제2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신고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해외이주신

고 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 본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세대주의 사전 신청이 있는 경우 제2항의 정정신고에 따라 세대주가 변경되면 그 사실을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의 방법 등으로 변경 전 세대주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2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거주지를 가진 세대주나 거주지에 있는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그 거주지를 신거주지로 하는 전입신고를 받을 때마다 전입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세대주,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25조제2항 중 “서명하거나 날인하도록”을 “서명 또는 날인하거나 손도장을 찍도록”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법 제20조”를 “법 제20조 또는 법 제20조의2”로 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제5항”을 “법 제20조제5항 또는 법 제20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법 제20조제5항”을 “법 제20조제5항 또는 법 제20조의2제2항”으로, “정정 또는 거주불명 등록”을 “정정”으로, ““직권등록”, “직권말소”, “직권정정” 또는 “직권거주불명등록” 등”을 ““직권등록”, “직권

거주불명등록”, “직권말소” 또는 “직권정정” 등”으로 한다.

제31조 중 “법 제20조제7항”을 “법 제20조제7항 또는 법 제20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31조의2 및 제3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거주불명 등록사항의 말소) 법 제20조의2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거주불명자의 주민등록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1조의3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조회 결과 행정서비스의 이용 없이 5년 이상 거주불명 등록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31조의3(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관련 자료의 제공) 시장·군수·구청장 및 행정안전부 장관이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제32조제1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 본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

조제1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법 제20조의2에 따른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관한 사무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호서식 및 제9호의2서식 앞쪽의 “신고사항”에 “신고사유”를 추가한다.

별지 제10호의2서식 뒤쪽에 “출입국 자료 이용 동의서”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로 하고, 유의사항란 제11호를 “주민등록신고를 한 재외국민이 국외에 30일 이상 거주목적으로 출국한 때에는 현 거주자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로 한다.

별지 제15호의3서식 뒤쪽에 “출입국 자료 이용 동의서”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로 하고, 유의사항란 제3호의 “재외국민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 또는 재외국민(해외체류자) 본인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경우로서 재외국민(해외체류자)의 출입국 사실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는 삭제하며, 작성방법란 제10호의 “제공될 수 있으며”는 “제공될 수 있고”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및 제24호서식의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을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앞쪽의 “신청 내용”에 “점자 스티커”를 추가한다.

별지 제3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 제29조, 제30조제1항, 제31조, 제31조의2, 제31조의3, 제60조의2, 별표 3,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11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공요청 대상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제31조의3 관련)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2. 「국민건강보험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정보
 - 가. 법 제6조에 따른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에 관한 정보
 - 나. 법 제43조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제출하는 요양기관의 입소자 현황 정보
 - 다. 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 징수에 관한 자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는 수급자에 관한 정보
4. 「국민연금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 가. 법 제7조에 따른 가입자에 관한 정보(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장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 나. 법 제50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5. 「국적법」 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 신고자료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국적상실에 관한 자료
6. 「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에 관한 정보
7. 「병역법」 제77조의5에 따른 병역 정보
8.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수급권자에 관한 정보
9.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자료
10. 「아동수당법」 제2조에 따른 수급아동에 관한 정보
11.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따른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에 관한 정보
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른 각종 연금·복지 급여의 지급기관 등에 제공하기 위한 사망정보
13.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등록 정보
14. 「초·중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초·중등학교 학생에 관한 정보
15. 「출입국관리법」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출입국정보
1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의 수용된 사람에 관한 정보

사 실 조 사 서						
등록기준지						
주소		세대주	전화번호			
조사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입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조사 개요	조사이유		조사일시			
	조사결과					
조사 내용	현장방문	☐ 확인 ☐ 미확인	※ 수도·전기·가스 사용여부, 우편수령 여부, 취사·가재도구 존재 여부 등 생계·숙식 여부를 확인			
	대상자진술	☐ 확인 ☐ 미확인	※ 주민등록전산시스템상 대상자의 휴대전화와 등록된 경우 통화 여부·일시·조사내용 등 확인			
	참고인진술	☐ 확인 ☐ 미확인	※ 이·통장, 주변 주민 등 면담 및 진술여부·일시·조사내용 등 확인			
	종합의견	※ 조사방법 및 전입 이후 거주상태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히 적되, 대상자 및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진술인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습니다. (용지가 부족하면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확인	신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이 (통) 장	(서명 또는 인)	
조사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법」 제20조제1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읍·면·동장 귀하						
유의사항						
1. 「주민등록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 의하여 사실 조사를 실시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라 사실조사서에는 법 제11조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의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신고의무자의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면 이장이나 관계공무원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사실조사 시 관계 공무원은 「주민등록법」 제20조제8항에 따라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합니다.						
3. 사실조사의 조사내용은 점검사항을 참고하여 전입 이후의 거주상태를 자세히 기재하도록 합니다.						
4. 사실조사 대상자의 휴대전화번호가 주민등록전산시스템 상에 등록된 경우, 대상자의 진술을 확보해야 합니다.						
5.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 번호	접수일	처리 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한글)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도) (시·군·구)	※ 시·도 및 시·군·구까지만 작성 (상세 주소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락처	
재발급 사유	[] 수수료 면제를 신청함 ※ 수수료 면제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및 관계 법령에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 분실 [] 훼손 [] 성명 변경 [] 주민등록번호 변경 [] 주소 변경 칸 부족 [] 용모(사진)변경 [] 지문 재등록 [] 미수령으로 회수·파기 [] 주민등록 말소자의 귀국 [] 재외국민 주민등록 [] 그 밖의 사유	
주민등록증 발급사실 문자통보 서비스	본인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신청되거나, 발급된 주민등록증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배송 또는 민원인에게 교부되었을 때 그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통보받는 서비스는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 신청	[] 미신청
주민등록증 수령 방법	[] 신청기관 방문 [] 등기우편	[] 주민등록기관 방문
주민등록증 수령 문자 안내 서비스	[] 신청	[] 미신청
점자 스티커	[] 신청	[] 미신청
등기우편 수령 주소	[] 주민등록 주소와 같음	
※ 주민등록 주소가 아닌 경우: (우)		
「주민등록법」 제27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관계 공무원 방문 재발급 신청인	성명(한글)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도) (시·군·구)	연락처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첨부 서류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신청인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3.5cm×4.5cm) 1장 2. 종전의 주민등록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가.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은 후에 분실했던 주민등록증을 찾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분실했던 주민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나. 국외로 이주한 사람이 영주(永住)하기 위해 귀국한 경우로서 국외로 이주하기 전에 주민등록증을 반납한 경우 다.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귀국한 경우로서 국외로 이주하기 전에 주민등록증을 반납한 경우 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였으나 3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아 해당 행정기관이 파기한 경우 마. 습득한 주민등록증의 수령을 안내하였으나 1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아 해당 행정기관이 파기한 경우 3. 관계 공무원에게 증중장애인을 방문하여 재발급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발급 대상자가 증중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나. 증중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증명하는 자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전산시스템
수급자 정보, 독립유공자 정보, 국가유공자 정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정보, 참전군인 정보, 5·18민주유공자정보, 특수임무수행자 정보,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정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은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신청과 관련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이 수수료 면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데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철회는 신청한 날의 근무 시간이 끝나기 전에 해야 합니다. 근무 시간이 끝난 후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중증 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 방문 발급 신청은 해당 중증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중증장애인의 세대주, 배우자 및 직계혈족)가 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는 국외이주신고자가 출국 전에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급하지 않으며,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은 재외국민으로 등록이 완료된 출국 다음 날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은 외교부의 해외이주신고를 통보받은 이후에 교부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주민등록 통보서비스' 중 '주민등록증 발급 · 재발급' 을 신청하면, 본인의 주민등록증 신청이 접수되거나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주민등록증이 배송되었을 때, 그리고 주민등록증이 교부되었을 때 본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그 사실을 통보해 드립니다.
- 주민등록증 수령 방법
 - '방문 수령' 을 선택한 경우에는 신청 후 3년 내에 주민등록증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3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은 주민등록증은 파기됩니다. 발급 신청 기관이 주민등록지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 후 6개월까지는 발급 신청 기관에서 주민등록증을 찾아 가시고, 6개월이 지난 후부터는 주민등록지인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등록증 신청 후 주민등록지가 변경되어 변경된 주민등록지에서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주민등록 기관에서 주민등록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등기우편 수령' 을 원하는 사람은 신청할 때 등기우편료를 납부해야 하며, 주민등록증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을 때 단문 메시지(SMS) 안내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휴대전화 번호를 작성하기 바랍니다.
 - '등기우편 수령' 을 선택한 경우, '등기우편 수령 주소' 칸에 작성된 주소로 발송한 주민등록증을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리 수령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발급 신청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 드리며, 최초 발송일부터 5일 안에 3회 발송했음에도 신청인의 사정으로 주민등록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직접 발급 신청 기관을 방문해 찾아가셔야 합니다.
- 수수료를 내는 경우
 -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자연적인 훼손은 제외)해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 외과적 시술(재해·재난으로 인한 경우 제외) 등으로 용모가 변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 발급 및 습득된 주민등록증의 미수령으로 인한 파기로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 제출하신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발급 기관에서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의11(변경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의5제6항제1호에 따른 변경위원회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임명한다.	제12조의11(변경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
1.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경찰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1. 행정안전부-----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위원회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2.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3조(말소신고 등) ① (생략)	제13조(말소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의 말소신고 또는 거주불명 등록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주민등록표를	② ----- 말소신고-----

정리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신 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용을 통하여 재외국민임을 확
	제1항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신		인할 수 있는 재외국민등록부
	고를 받으면 법 제20조에 따른		등본 또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
	이 경우 신고의무자에 대한 최		국민 본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고 및 공고에 관하여는 법 제20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외국민등
	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고,		록부 등본 또는 해외이주신고
	직권조치 및 직권조치에 따른		확인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
	통지 및 공고에 관하여는 법 제		야 한다.
	20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		
	다.	제20조(정정신고 등) ①·② (생	제20조(정정신고 등) ①·② (현
제14조(등록신고서식) ① (생 략)	제14조(등록신고서식) ① (현행과	략)	행과 같음)
	같음)	<신 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② 법 제6조제1항제3호나목에	② -----		세대주의 사전 신청이 있는 경
따른 재외국민이 법 제10조의2	-----		우 제2항의 정정신고에 따라 세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신고를	-----		대주가 변경되면 그 사실을 휴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2	-----		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의 방법
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재외국	-----.		등으로 변경 전 세대주에게 통
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외국	<후단 삭제>		보할 수 있다.
민등록부 등본 또는 해외이주신		제23조(전입신고) ① ~ ③ (생	제23조(전입신고) ① ~ ③ (현행
고 확인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		략)	과 같음)
여야 한다.		<신 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 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거주지를 가진 세
	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신고를		대주나 거주지에 있는 건물 또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		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임대인
			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

	<u>16조제1항에 따라 그 거주지를 신거주지로 하는 전입신고를 받을 때마다 전입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세대주,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u>
제25조(구술신고) ① (생략)	제25조(구술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구술신고를 받은 관계 공무원은 정하여진 신고서에 그 말한 사항을 적어 이를 신고인에게 읽어 들려주고, 신고인으로 하여금 <u>서명하거나 날인하도록</u> 하여야 한다.	② ----- ----- ----- ----- ----- 서명 또는 날인하 거나 손도장을 찍도록 ----- -----.
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주민의 거주사실과 주민등록표를 대조·확인하여 <u>법 제20조에 따른 조치를</u> 하여야 한다.	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 ① ----- ----- ----- ----- 법 제20 조 또는 법 제20조의2-----.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9조(직권조치 근거 공부의 범위) <u>법 제20조제5항에</u> 따른 공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제29조(직권조치 근거 공부의 범위) <u>법 제20조제5항 또는 법 제20조의2제2항에</u>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제30조(직권조치방법)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u>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직권으로</u> 주민등록, 등록사항의 말소, 등록사항의 <u>정정 또는 거주불명 등록</u> 을 한 때에는 그 주민등록표에 “ <u>직권등록</u> ”, “ <u>직권말소</u> ”, “ <u>직권정정</u> ” 또는 “ <u>직권거주불명등록</u> ” 등의 조치사항과 그 연월일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30조(직권조치방법) ① ----- ----- 법 제20조제5항 또는 법 제20조의2제2항----- ----- 정정----- ----- “직권등록”, “직권거주불명등록”, “직권말소” 또는 “직권정정” 등-----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u>법 제20조제7항에</u> 따른 통지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르고, 공고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u>법 제20조제7항 또는 법 제20조의2제3항</u> ----- ----- ----- ----- -----.
<신설>	제31조의2(거주불명 등록사항의 말소) <u>법 제20조의2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거주불명자의 주민등록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u>

다.	--.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u><신설></u>	<u>9의2. 법 제20조의2에 따른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관한 사무</u>
10. ~ 17. (생략)	10. ~ 17.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주민과	
연락처	(044) 205 - 3142